

의안번호	2202625
의 퇴 인	박용갑 의원
회 답 일	2024. 10. 18.
추 계 번 호	24A26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 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등¹⁾의 옥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두는 경우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1)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함

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⑬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기존에 설치된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안 부칙 제2조²⁾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소방설비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규정
- 개정안에 따라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 등³⁾에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나, 추계에 필요한 사업량 및 단가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의 예시로 방화셔터 및 소화수조를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추계에 필요한 소방설비의 유형이나 설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음
 - 또한,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때 방화셔터 및 옥내소화전⁴⁾ 등의 소방설비를 이미 갖춘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각 시설의 소방설비 구비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추가로 발생할 재정지출 규모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방화셔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⁵⁾, 옥내소화전의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⁶⁾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 안 부칙 제2조(소방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1조의2제13항에 따른 소방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외에 공동주택 등 민간 시설의 경우 소방설비 설치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함께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소방설비 설치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외함

4) 개정안에서는 “소화수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화수조를 포함한 옥내소화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함

5)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단서 생략)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1. 소화설비

하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인 건물이나 지하층에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두고 있는 건물 등의 일부는 이미 소방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더하여 방화셔터, 옥내소화전 등 소방설비의 경우 설치하려는 장소에 위치한 소방대상물(전기차 충전시설)의 수, 위치 및 대상물 간 간격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설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로는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개수만 일부 확인할 수 있을 뿐 각 시설의 설치 장소나 위치, 밀집도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필요한 소방설비의 규모와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전기차 충전시설 중 옥내에 위치한 시설은 527기(2024년 7월말 기준)이며, 국토교통부⁷⁾ 및 소방청⁸⁾이 제출한 소방설비의 설치 단가 예시에 따르면 자동방화셔터 설치 단가는 1식당 210~590만원, 옥내소화전 설치 단가는 1식당 약 3,200만원임

* [참고자료 1]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 [참고자료 2] 자동방화셔터(공동주택 기준) 설치 단가

* [참고자료 3] 옥내소화전(소화수조 포함) 설치 단가

- 이에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 등의 옥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나)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세목 생략)

5)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7) 공동주택 내 방화셔터 설치 단가 예시 자료 제출

8) 옥내소화전(소화수조 포함) 설치 단가 예시 자료 제출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단위: 기)

운영주체	충전시설 전체	충전시설 현황		
		옥내	옥외	확인 중
국가(A)	8,422	412	8,010	—
지방자치단체(B)	1,068	115	643	310
한국전력(C)	10,916	7,536	2,371	1,009
민간 등 기타(D)	353,555	193,872	130,911	28,75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계(A+B)	9,490	527	8,653	310
합 계(A+B+C+D)	373,961	201,935	141,935	30,073

주: 1. 2024년 7월말 기준
 2.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등록 기준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자료 2] 자동방화셔터(공동주택 기준) 설치 단가

종류	내측 크기(mm) ¹⁾	자동방화셔터 단가(만원)		총 금액 (만원) ²⁾
		재료비 (모터포함)	설치 및 시공비	
철제 셔터	3,000 × 3,000	180 ~ 190	70 ~ 80	250 ~ 270
	8,000 × 4,000	400 ~ 450	130 ~ 140	430 ~ 590
스크린 셔터	3,000 × 3,000	170 ~ 180	40 ~ 50	210 ~ 230
	8,000 × 4,000	300 ~ 350	80 ~ 90	380 ~ 440

주: 1. 공동주택 내 자동방화셔터 설치 단가 예시
 1) 내측 크기(mm)는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인정을 위한 최대(8m*4m) 및 최소 크기(3m*3m)에 따름
 2) 자동방화셔터의 재료비, 설치비 및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자료 3] 옥내소화전(소화수조 포함) 설치 단가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옥내소화전함	—	개	1	360,000	360,000
배관용탄소강관	—	M	100	11,440	1,144,000
재료비	—	식	1	34,320	34,320
관보온	—	M	100	3,900	390,000
소화펌프	400LPM	대	1	7,000,000	7,000,000
소화펌프(충압)	60LPM	대	1	2,400,000	2,400,000
소화수조	8TON	대	1	10,000,000	10,000,000
흔들림방지버팀대	—	식	1	500,000	500,000
노무비	—	식	1	10,000,000	10,000,000
합 계					31,828,320¹⁾

주: 1.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 단가 예시

1) 옥내소화전 설치를 위한 소화수조가 포함된 금액

자료: 소방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